

생물안전 확보 및 실험동물의 윤리적 관리를 위한 고려대학교 산하 생물 관련 연구시설 조치 방법 안내

1.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, 교내 생물 관련 연구시설의 연구책임자께서는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.

- 다 음 -

(1) 대 상 : 고려대학교 산하 연구시설
(세종캠퍼스 및 의료원 산하 각 병원 연구시설 포함)

(2) 기 한 : 2016년 1월 29일 (금) 까지

(3) 제 출 처 : 연구처 연구진흥팀 IBC/IACUC 간사 정예찬

전화 : 02-3290-1134, vethics@korea.ac.kr

(4) 협조 요청 사항 :

① 미등록된 생물안전 연구시설은 기준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.

* 신고문의

㉠ 안암,세종 - 연구처 연구진흥팀 생물안전관리자 정예찬

02-3290-1134, vethics@korea.ac.kr

㉡ 의료원 - 의과대학 생물안전센터 생물안전관리자 김재영

02-2286-1332, kimjaeyoung@korea.ac.kr

* 아래 생물체의 취급은 생물안전 연구시설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.

㉢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 - 미생물, 동물(곤충), 식물

㉣ 고위험병원체 - 질병관리본부 고시, 첨부파일 참조

㉤ 가축전염병 관련 병원체 - 검역본부 고시, 첨부파일 참조

② 의약품, 의약외품, 식품, 건강기능식품, 생물의약품, 화장품, 의료기기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실험동물사육실험시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.

㉦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2014년부터 식약처에 등록된 동물사육시설에서 수행되는 과제에 한하여 동물실험을 승인하고 있습니다.

㉧ 단과대학에서 식약처에 등록된 실험동물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, 해당 실험동물센터에서 사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
*2015년 12월 기준 교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 동물사육실험시설

- 보건과학대학 : 실험동물자원센터 (하나과학관 지하2층)
- 생명과학대학 : 계림실험동물자원센터 (하나과학관 지하2층)
- 약학대학 : 동물사육실 (연구실험동 207-1A, B호 및 6층)
- 의과대학 : 실험동물연구센터
(본관동물실, 제1의학관동물실, 구로병원동물실, 안산병원동물실)
- 문과대학 : 동물사육실 (신경행동분석동물실험실)

③ 식약처 등록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단과대학 실험동물센터에서 사육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(해당 동물 종의 수용 불가 등)가 있어 실험동물 사육실험시설을 등록 없이 별개로 운영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**생물안전위원회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**받아야 함.

- ㉠ 해당 연구시설이 식약처 동물사육시설 등록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연구내역 또는 수행하고 있는 연구의 연구계획서
- ㉡ 시설의 생물안전관리 방안을 담은 생물안전관리계획서
 - 병원체 취급·운반·보관에 관한 사항, 연구자 교육 및 보건관리 사항, 오염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, 비상 대처 방안 및 연락망, 연구시설 설비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.
- ㉢ 시설의 실험동물 사육실태를 포함한 동물사육시설 표준작업서
 - 운영관리, 사육관리, 안전관리 체계와 사체, 사료, 깔짚 등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.

④ ①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, 『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』에 따른 [생물체의 위험군 분류]목록의 **제3위험군 및 제4위험군 생물체** 또는 『생화학무기법』에 따른 [생물작용제 및 독소] 및 『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[제1군, 제2군, 제3군의 감염병 병원체]를 취급·연구하는 연구시설은 다음의 서류를 **생물안전위원회에 제출**. (첨부파일 참조).

- ㉠ 해당 연구시설이 생물안전 연구시설 신고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연구내역 또는 수행하고 있는 연구의 연구계획서
- ㉡ 시설의 생물안전관리 방안을 담은 생물안전관리계획서
 - 병원체 취급·운반·보관에 관한 사항, 연구자 교육 및 보건관리

사항, 오염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, 비상 대처 방안 및 연락
망, 연구시설 설비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.

- ⑤ 기한 내 신고·등록 완료나 서류 제출 완료가 어려울 경우, 기한 내에
[조치 계획서]를 제출하여 주십시오.
- ⑥ 제출 기한 이후 생물안전 및 실험동물 사육관리체계가 개선되지 않는
시설 및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과제심의 제한, 총장 및 교원 윤리위원회
보고 등의 **후속 조치가 불가피**하오니,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.

문의 : 고려대학교 연구처 연구진흥팀 IBC/IACUC 간사 정예찬
전화 : (02)3290 - 1134 vethics@korea.ac.kr